

# 『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』 중 난민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관련 수정 사항

2011. 5. 17.

공익변호사그룹 공감

황필규 변호사

## 주요내용

법률안	수정안
<p>바.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. <u>난민의 입증정도의 경우 일반민사절차에서 요구하는 개연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“합리적인 가능성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(안 제9조).</u></p>	<p>바. 난민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의 완화의 내용을 명문화함. <u>난민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난민인정결정권자의 사실 확인 의무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“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”(benefit of doubt)를 반영하고자 함(안 제9조).</u></p>

법률안	수정안
<p><u>제9조(입증책임 및 입증정도)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<u>제9조(입증책임 및 입증정도)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. 다만,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모든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를 공유한다.</u></p> <p><u>②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무부장관은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
\* 유엔난민기구의 유권해석과 각국의 판례 등을 통해 확립된 난민 관련 특수한 증거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함.

\* 결정과 판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